

##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실태 및 인권증진방안 연구결과 발표회

1. 일 시 : 2005년 1월 26일(수) 오후 2시

2.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11층)

3. 주 최 : 법무부

4. 주 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5. 연구진

- 책임연구원 : 곽노현(방송대 법학과교수, 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공동연구원 : 이은미(성공회대 외래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수료)  
한상훈(연세대 법학과교수)  
고영신(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법무법인 총정)
- 연구원 : 신현호(34기 사법연수생)  
김지혜(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수료)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

### 6. 진행순서

사회 :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

내용	발제자
1) 인사말	이영주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2) 피해사례발표	정현주 홍영선(피해자 가족)
3) 연구결과발표 - 문헌연구결과(외국의 입법동향) -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실태 -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증진방안	한상훈(연세대법학과 교수) 이은미(성공회대 외래교수) 고영신(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4) 지정토론	이호중(한국외국어대학 법학과교수)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폭력상담소장) 박명수(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계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5) 질의응답	

<사례 1> 시각장애여성장애인의 피해사례

정현주

## 1. 사건개요

저는 시각장애 1급으로 간신히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이 추근대는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 신고했던 경험이 3번 정도 있습니다. 본 발표회에서는 제가 연구소와 관련되었던 사건과 그 이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두 번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겪은 사건은 제가 어디를 찾아가고 있던 중에 방향을 잘 몰라서 찾고 있는데 대각선 앞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자기가 길을 찾아주겠다고 자기의 집으로 유인하려한 상황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못들은 척 무시하였지만, 그 사람은 제가 일을 다보고 나왔을 때도 다시 다가와 계속 자기 집에 같이 가자고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보호자가 없이 제가 무시하고 저희 집을 가면 그 사람에게 저희 집을 알려주는 결과가 될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두한 경찰은 처음부터 가해자는 그러한 적이 없는데 제가 허위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가해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본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 가서 거의 7-8시간을 계속 같은 질문으로 추궁을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냥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자백하고 본 사건은 종결 되었습니다.

연구소의 도움을 받은 사건은 전에 일을 겪었던 곳과 비슷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2003년 8월말쯤 천호사거리 근처 골목을 걸어가던 중 어느 80대 노인이 마주 걸어오고 있었고, 그 사람은 저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손을 뻗쳐 제 엉덩이를 쳤습니다. 그 전에도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불쾌한 경험이 몇 번 있었지만, 나하나 참고 넘어가면 모든 걸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 넘어간 게 당연하다는 듯이 되어서 비슷한 불쾌한 경험(지팡이로 엉덩이를 찌르는 등의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12로 신고를 했고 관할 지구대로 연결이 됐지만, 도착이 너무 늦어서 그 사람은 사라진 이후였고, 경찰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꼭 신고하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사람을 비슷한 장소, 비슷한 시간에 보게 되어 다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를 갖고 혼자 지내다 보니 주위에서 짐적거리는 일이 많아서 예전에도 신고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신고 사례가 기록이 남아, 제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전혀 사건화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장애인 전화 상담소에 전화를 해서 장애인권인문제 연구소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간사님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경찰의 태도는 바뀌



었고 저를 오히려 가해자 취급했던 지구대 경사는 징계를 받았고, 송파 경찰서 모든 직원에게 장애인 관련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 2. 여성 장애인으로써의 형사절차상에서 느꼈던 점

본 관련 사건과 더불어 제가 경험했던 비슷한 사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성 장애인으로써 형사절차상에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장애인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찰의 태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은 비록 생각과 사고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일단 장애인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찰들의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몇 번의 사건을 거치면서 경찰들의 무시하는 말투나 태도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여성장애인을 대함에 있어 경찰들의 태도에서 느껴진 것은(특히, 성 수사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이) 증거가 없으니깐 무조건 가해자 편에 서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의 말을 더 믿어주지 않고 들을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의 말에, 여성의 말에 좀 더 귀 기울여주시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2) 여성장애인으로서의 느낌

여성으로서 이러한 불쾌한 경험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위협에 대해서 민감하고 두려움을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 저의 신고를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신고로 치부하고 사건화 하지 않는 경찰들의 태도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장애인들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청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경찰들마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면이라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참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 3. 수사과정에서 느꼈던 점

수사과정은 저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가해자 취급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더니 같은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장시간 반복질문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지치게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화장실도 가르쳐 주지 않아 오랜 시간을 화장실도 못 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두통약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술서도 자기들 임의대로 작성하여 읽어 주지도 않고 제 도장을 받아 직인을 찍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어떠한 과정에서도 시각 장애인으로서 받아야 할 어떠한 배려도 해주지 않았습니다(화장실의 위치나, 신뢰인 동석하의 진술서 대독 등).

조사 과정을 통해서, 수사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장애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배려를 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의 모든 과정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만들었던 것은 너무나 힘들었던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제2의 3의 장애인들이 이러한 불쾌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피해사례

홍영선

## 1. 사건개요

정신지체 장애인이며 부녀자인 저희 누나는 2004년 5월 19일 오전에 동네 남자(약 53세)와 사소한 언쟁이 있은後 가해자가 흥분하여 작업중이던 망치로 누나집의 철대문을 부순 후 무단 침입하여 혼자 있던 누나를 마구 폭행하고, 다시한번 더 가해자의 감정을 건드리면 “취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 1) 형사고발장을 本人인 동생이 작성하게 된 경위

피해자인 누나는 무섭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있던 차에 폭행사건 발생 4일후에 동생인 本人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대학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 및 진단서를 발급받고 해당 경찰서에 누나를 대신하여 本人이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누나가 형사고발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가해자가 오히려 누나한테 폭행당했다고 허위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 2) 해당 경찰서의 조사과정

담당형사는 쌍방이 형사고발 되었다는 전제하에 누나와 가해자 각자를 불러 조사하고 쌍방 입회하에 대질 신문을 하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측에서 누나가 의견상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도 형제 및 가족의 도움을 철저히 배제한 채 수사를 진행 하였었습니다.

예)

① 첫 대질신문 때 누나 남편이 참석해서 옆자리에서 진술을 도우려 할 때 담당형사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왜 떠드느냐. 당신이 현장에 있었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남편이 항의하자 담당형사는 남편을 그 현장에서 쫓아 버렸습니다.

② 그 사실을 핸드폰을 통해 통보받자마자 本人은 즉시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는 장애인이고 本人이 즉시 갈 테니 조사 진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고 지역적인 거리 때문에 1시간 만에 도착해보니 조사는 이미 종결 처리 되었었습니다. 이에 本人은 “장애인이며 부녀자를 이렇게 부당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누나가 진술에 서명한 것은 당연히 무효이고 진술서를 본인에게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었습니다. 이에 담당 형사뿐만 아니라 동료 형사들까지 가세하여 "당신에게 보여줄 법적 의무도 없으며 누나가 장애인이란 증명이나 진단서 있느냐? 의사 표현할 줄 알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는데도 장애인이나?" 고 오히려 본인에게 훈계하였습니다.

③ 이에 본인은 경찰조사가 잘못되어 간다고 판단하여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해당부서에 있는 분에게 공정한 수사를 거듭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다시한번 대질신문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담당형사는 본인이 참관인이기 때문에 전혀 진술협조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담당형사에게 "본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누나의 보호자이지 참관인이 아니다"라고 항의 했었고, 담당형사 및 동료형사들은 본인에게 수사에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신히 일차 대질신문 내용의 잘못된 부분 일부만을 수정할 수 있었으며, 누나의 폭행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서 본인은 담당형사에게 "이 사건의 진실은 ㉠현장검증과 ㉡쌍방이 거짓말 탐지기 사용으로 쉽게 판단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형사는 쌍방 주장이 엇갈리고 화해가 힘들어 검찰에 송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 3) 경찰조사과정에서 느낀 점

- ① 의견상 (외모, 말투 등 등)에서 분명히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배려(정상인인지 아닌지의 확인여부, 친척·형제들의 요청을 무시)가 전혀 없었고 가해자인 비장애인의 허위 진술을 여과 없이 받아들임
- ② 경찰조사가 위압적이 분위기라 정상인도 주눅이 드는데 경찰서에 난생 처음 와 본 장애인이자 부녀자를 정상인의 진술이 맞느냐고 다그치 듯이 조서를 작성하고 진술서에 날인하라고 한점
- ③ 동생인 본인이 늦게나마 경찰조사 과정에 개입 안 되었으면 피해자인 누나가 가해자로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따라서 누나가 형사범이 되었을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④ 나약한 부녀자가 남자한테 폭행당했는데도 부녀자의 배려는 전혀 없었고 가해자인 남자의 허위진술에 집착

### 4)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족의 고통

(1) 누나의 폭행사건에 본인은 주변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 주어야겠다는 취지로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가해자의 허위고발과 해당 경찰서의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조사과정을 통해서 본인 및 가족의 본래 취지

는 장애인인 누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었는데, 누나를 거꾸로 범죄자로 만들어 주는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졌었습니다

(2) 누나가 어려서 큰 병을 앓아 정신지체가 되었으나 가족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었고 누나 스스로 방어 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족들이 막았다는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3) 특히 저희 어머니는 경찰조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결국에는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본인 및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기도 했습니다.

#### 5) 최종 결론

本人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지원(법률자문 등) 및 격려를 받으면서 검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폭행혐의를 인정했고 누나는 장애우협회의 도움으로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현재 누나는 장애인에 등록(정신지체 3급)되어 있습니다.



##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증진방안에 대하여

이호중 (외대 법대 교수)

### 1. 총평

형사절차상의 인권보호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은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여성'이라는 점과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이중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기에, 이들이 형사절차에 관여하게 될 때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위험은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이번 연구가 이와 같은 명제를 추론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로서 드러내고 우리 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할 과제로 부각시킨 것은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여성장애인이 당하는 인권침해의 실태를 자세히 파악한 최초의 연구결과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에 비하여,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인권증진방안은 다소 개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대책제시에서 '정교함'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인권침해유형과 대책의 상당부분은 여성장애인에게 고유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불법체포, 체포시의 형식적인 권리고지, 수사시 행해지는 반말이나 폭력 등의 인권침해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단 여성장애인들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또한 대책으로 제시된 것 중 변호인의 신문참여권과 임의동행의 문제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등의 문제는 이미 여성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피고인,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보호대책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는 아직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문제는 더욱 열악하여 이제 시작단계라 말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상의 인권보호의 문제는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피의자·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한 가운데 장애인 내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아래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 2. 피의자·피고인인 여성장애인의 보호에 관련하여

#### 1) 변호인의 신문참여권과 국선변호인의 확대적용



여성장애인이 피의자인 경우 그들의 심리적 위축감이나 사리판단 내지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변호인의 신문참여의 문제는 여성장애인이나 장애인의 특수한 문제라기보다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속한다.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위헌결정<sup>1)</sup>을 내린 바 있고, 그 후 법무부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개정안 제243조의 2).<sup>2)</sup> 개정안에서는 증거인멸, 공범의 도주,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위협의 우려가 있거나 신문방해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제한사유의 범위가 너무 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주,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위협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변호인의 신문참여와는 무관한 문제이므로 이것이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할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변호인의 신문방해가 인정될 경우에 변호인의 퇴거를 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변호인의 신문참여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국선변호인제도를 피의자에게도 확대적용하는 일이다. 현재 형사소송법 상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인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통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할 만한 자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는 모든 피의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우선적으로 여성피의자나 장애인피의자에게만이라도 수사절차에서 국선변호인제도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수사 상황의 녹화에 대하여

연구보고서는 “반드시 수사상황녹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보고서 157-8면)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수사상황의 녹화 필요성은 대체로 다음의 두가지 논거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수사과정에서 폭력이나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이고, 둘째는 여성장애인의 진술이 - 특히 수화에 의한 경우 - 조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왜곡되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첫째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실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강압이나 폭력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한 녹화의 주체가 수사기관인지라 언제든지 녹화를 중단하고 강압적 폭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서작성과정의 녹화가 조서작성과정에서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는데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조서작성과정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둘째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서명

1) 헌재 2004.9.23, 2000헌마183.

2) 2004.12.15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개정안



날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당시 내가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경우 조서의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 부정되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sup>3)</sup>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대법원은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경우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 추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실로 막강한 힘을 가진 증거로 활용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단계에서 피의자가 기재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과 조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사법경찰관 작성 조서는 물론이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제는 오히려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번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서작성과정을 녹화하려 들 것이다. 물론 수사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신문참여를 통하여 가능하며 또한 그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수사과정의 녹화필요성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3)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장애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경우 비록 경찰이나 검찰의 적나라한 폭력이나 강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느끼는 공포 내지 심리적 위축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 특히 정신지체 등 사리판단이나 언어전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경우 교묘한 유도신문에 휘말리어 원하지 않는 자백이나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할 위험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여성장애인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신문받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변호인의 신문참여와는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변호인의 신문참여가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권 보장은 여성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1. 피의자가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그리고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244조의 2). 개정안은 이와 같은 규정을 법원의 피고인신문에도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276조의 2).

다만 이 규정은 몇 가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식의 재량

3) 대법원 2004.12.16. 2002도537.



규정이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동석을 허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은 신문참여권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만큼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 허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청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신청권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을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신문하기 전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신청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단순한 동석 이상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보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4) 의사소통의 지원

여성장애인의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신문과정에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체포의 초기단계에는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또 여성장애인이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현실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등에 대비하여 수사기관과 여성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체포든 임의동행이든 여성장애인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나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즉시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피의자가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경찰이나 검찰은 관할지역에서 장애인지원기관과의 서비스연계망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 5) 장애인지원센터 내지 지원기관의 역할

연구보고서는 여성장애인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장애로 인하여 형사절차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인 장애인지원센터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다만 장애인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우선 장애인지원센터는 전국에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전까지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나 지원기관이 장애인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호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절차상의 인구보호와 관련하여 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모형은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의 “연계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소 이상적일지는 모르나 아래와 같은 시스템을 구상해 보았다.

- 장애인지원센터는 의료기관, 변호사그룹,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 경찰이나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경우 즉시 장애인지원센터에 장애의 종류와 정도, 범죄혐의사실 및 장애인에게 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장애인지원센터는 즉시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도우미를 배정하도록 한다. 전담도우미는 해당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해당 장애인과 형사사법기관 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 전담도우미는 해당 장애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의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의료적 처우의 주선, 변호인의 선임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진 공익변호사를 위촉하여 공익변호사플체를 운영하도록 한다.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변호사가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무료 혹은 저렴한 수입료로 변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 3. 피해자인 여성장애인의 보호에 관련하여

#### 1)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 필요

법무부는 지난 2004년 11월 “범죄피해자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 안에는 피해자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자지원 단체의 설립지원 등의 규정이 있으나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나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껏해야 제7조에서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전부라 할 수 있다. 사실 법무부에서 처음 범죄피해자기본법안을 만들었던 2004년 9월 당시에는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례”라는 장을 별도로 두고 그 안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공판방청권, 공판기록열람등사권 등을 규정하려고 하였다가 정작 입법예고에서는 피해자의 정보청구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그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나, 짐작으로는 법무부에서 형사절차상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2004년 12월에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보호에 관하여 매우 편파적인 몇개의 규정만을 신설하는데 그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의 강화(개정안 제294조의 2), 신문이나 조사시 신뢰관계자의 동석(개정안 제163조의 2, 제221조),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제도(개정안 제165조의 2),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시 심리비공개제도(개정안 제294조의 3).

이러한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한 피해자보호방안에 비하면 지극



히 미흡한 수준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피해자에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피해자신문시 변호사의 참여 허용), 기록열람등사권, 공판정출석권, 재판비공개청구권, 형소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청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재정신청권도 모든 범죄에 대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정보권도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기본법안 제7조처럼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기본적인 진행상황(예를 들어 범죄자의 체포나 구속, 기소여부, 공판기일, 형선고내용, 석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은 형사사법기관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신문시 인격권 및 명예의 존중의무, 대질신문의 회피의무,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의무,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2) 여성장애인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위와 같은 일반적인 피해자보호규정의 도입과 함께 여성장애인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과 대책들이 필요하다.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여성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모든 범죄사건에 대하여 성폭력특별법에서처럼 영상물의 촬영보존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하며, 신뢰관계자의 동석과 진술보조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다음의 점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장애인 용 피해자보호책자의 특별제작 :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진행이라든가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지원단체 등 피해자가 피해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일종의 피해자보호책자를 각 수사기관별로 제작하여 이를 수사 초기에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된 책자나 녹음테이프 등을 별도로 제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자보호책자의 내용은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실의 제공 : 장애인 피해자가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증인신문 등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대기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 증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곳에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지원센터 내지 피해자지원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네트워크의 마련 : 앞서 언급한 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모형은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경우에도 그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 4. 구금시설 수용 시의 여성장애인의 인권문제 - 몇 가지 예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이번 연구와는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일 것이다. 이 문제는 형사절차상의 인권침해의 문제라기보다는 구금시설의 시설



환경과 처우 상의 차별 및 인권침해의 문제가 그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치소나 경찰서유치장에 수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여성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구금시설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은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상황이다. 물론 그나마도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한 경찰서 유치장보다는 나은 수준임에도 그렇다. 아래에서는 교도소나 구치소의 여성 및 장애인수용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예를 드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교도소나 구치소는 행형법상 여성수용시설을 남성수용자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시설로 마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여성수용자의 수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보통 구치소의 한 사동 정도를 여성수용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동 하나 정도를 여성수용시설로 활용하면서 기타 부대시설(목욕탕, 전화사용, 작업장, 운동장)은 남성수용자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는 여성수용자의 인권보호에 있어서 남성수용자와 차별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구금시설은 신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거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거실이라고 해야 거실 벽에 바닥에서 약 1m 되는 높이로 손잡이대를 설치하고 난방을 해 주며 화장실을 좌변기로 설치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일반 거실과 똑같다. 위와 같은 정도의 구치소 내 장애인수용거실의 상황은 장애인 수용자, 특히 여성장애인 수용자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환경 자체가 이미 인권침해적 상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수용 거실은 화장실에 좌변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실 내에서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신체장애인의 경우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다. 휠체어나 목발의 사용금지라는 비단 화장실 이용시 뿐만 아니라 거실 내에서 생활하는데 상당한 불편과 어려움을 동반하게 됨은 명백하다. 근본적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해 충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신체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취침이나 휴식을 취할 때 보다 많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수용인원과다와 공간부족을 핑계로 구금시설 내에서 그러한 배려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교도소나 구치소 내 여성장애인은 보통 여성수용사동의 한 두개 거실 정도를 장애인수용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하게 된다. 그 거실의 설비는 남성수용시설의 장애인거실과 같은 수준이다. 또한 여성장애인 수용자가 극히 적은 관계로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임신여성 혹은 출산여성과 함께 같은 거실에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비하면 경찰서 유치장의 여성장애인 수용 실태는 훨씬 더 열악한 수준이다.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화장실 칸막이문제나 세면시설, 목욕, 난방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비하여 훨씬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토론문 2>

##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실태와 인권증진방안 연구발표회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1.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경우 비친고죄이며 이는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하고부터 현장에 서는 무리 없이 적용이 되어왔다.

연구에서는 자꾸 '친고죄'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요약 및 정책제언 부분, p127, p150, p178)

성폭력특별법 8조 여성장애인 조항은 '비친고죄'이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설립부터 줄 곳 비친고죄 적용되었다.

### 2. 헌법상의 규범적 보호 장치

모든 국민의 권리는 여성장애인의권리도 될 수 있으나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여성이나 장애유 형에 따른 보호는 하위규범으로라도 특별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태도

고소·고발 과정에서 경찰초등수사와 검찰조사시 대부분 남자조사자로 이루어짐.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있어서 관련된 조사시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경찰 : 과학수사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다르다.

상담소로 상담이 먼저 오지 않고 경찰서로 고소·고발이 먼저 갔을 때 상담소(NGO)의 역할을 너무나 축소하려는 태도 (너희는 비디오 진술할 때 동석만 하라 수사권은 우리에게 있다. 여성장애인성폭력 특성을 모른 채 기존의 일반 비장애 성폭력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경향이 아직도 높다)

검찰 : 중립을 유지하려는 의도의 냉철함 보다..... 합의를 유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 4. 수사 상황 녹화의 필요성

- 자료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나 피해자에게)인권침해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녹화 테이프만 볼 때 장애의 특성이 가려질 우려가 있다.

#### 5. 재판부 및 국선변호인 지정의 개선

- 국선 변호인 더 적극적이었으면 한다.

#### 6. 장애 유형과 관련한 규정

- 현재 우리나라 15개 유형의 세분화된 장애유형을 고려해야 한다.